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0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을 등 조례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지방공사·지식산업센터·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통상진흥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 나.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100%)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규정
- 다. 감면조례의 인용법규 등을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2.1.1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1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중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6개 감면조항 삭제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현행 제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행 제5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현행 제6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현행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현행 제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현행 제12조)

-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불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감면율 100%을 유지함.
- 안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본문은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을 감면조례로 규정함.
- 감면 조례의 인용 법제명을 현행 법제명에 맞게 수정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감면신청 등), 안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3.2%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감면

수준인 14%대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장기·과다 지원되어온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감면 조문		감 면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내용		개정내용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제2조	제38조 4항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재산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제3조	제38조 3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제5조	제15조 2항 제63조 4항 제85조의2	지방공사, 자치단체 출연법인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75%	지특법이관
		농수산물·지하철공사 및 공단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제6조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동일	지특법이관
제8조	제56조 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50% 100%	동일 50%	지특법이관
제9조	제60조 4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50%	지특법이관
제12조	제58조 4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100%	50%	지특법이관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농수산물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